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12.7.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7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영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상암2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공청사 용지현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 내(상암동 665 일원)
- 면 적 : 787㎡(약 238평, 소유자 : 서울시 SH공사)
- 공급 금액 : 2,090,110천원(추정 조성원가)
- 대금 납부
 -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이상(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공급금액의 90% 이하
 - 허용용도 : 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소요예산(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 2012년도 소요예산 : 209,020천원(부지매입 계약금)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원)

연 도	회 차	계	원 금	이 자	비 고
2012	계약금	209,020,000	209,020,000	0	이자를 연4%
2013	1회차	702,273,840	627,030,220	75,243,620	
2014	2회차	677,192,630	627,030,220	50,162,410	
2015	3회차	652,111,420	627,030,220	25,081,200	
	합 계	2,240,597,890	2,090,110,660	150,487,230	

3) 공공청사 용지현황

- 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2011.7.14)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0580호, 2011.4.12)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제7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4) 공공청사 용지현황

- 상암2지구 부지 매입 계약 체결 : 2012. 10월
- 매입 후 건축계획 수립 시까지는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상암2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따라서 지속적인 마포지역 개발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복지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상암2지구 월드컵파크 준공에 따라 입주민(4개 단지, 2,865세대, 약 10,000명)이 증가하여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청사용지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어 시세에 비해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하므로 적기에 매입하는 것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의 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